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절차 안내

Ⅰ. 조기취업자의 "취업" 기준 ★★★

인정 대상	비고
	※ 취업인정 불가 유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자로서	- 일용직근로자
<u>3개월</u>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 채용과 무관한 체험형 인턴

Ⅲ.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신청 대상자

가. 2022년 2월 졸업대상자인 재학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

(※ 2학기 및 동계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나. 제외 :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 야간과정 재학생

2. 적용범위

가. 인정 범위

※ 코로나19 관련 수업운영 방법에 따른 출석인정 적용범위 안내 ★★★

수업 운영방법	조기취업 출석인정 적용여부
온라인 전용 교과목	적용불가(미수강시 결석 처리됨)
현장실습 교과목(임상실습, 교육실습 등)	적용불가
학점교류 교과목	적용불가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대체 비대면(온라인)수업	적용
대면 수업	적용
실시간 수업	적용

- ※ 비대면(온라인) 수업 중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재량에 따라 출석인정 적용여부 결정 가능
- 나. 인정기간 : 학기 중 재직기간
- ※ 학기 중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 준비자는 퇴사 즉시 수업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퇴사한 다음날부터는 출석으로 불인정함.
- 다. 인정항목 : 출석에 한하여 인정함
- 라. 성적평가
 - 1) 담당교원은 출석현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 2) 조기취업자는 수강 교과목별로 과제물 제출 등 강의계획서상의 성적평가방법을 따라야 하며 <u>중간 및 기말시험에</u> 반드시 응시해야 함
 - 3) 조기취업으로 인해 부득이 정해진 시험기간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이 미리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교원은 별도로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